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11

발의연월일: 2021. 1. 7.

발 의 자 : 송옥주·맹성규·양이원영

윤미향・이수진비・임종성

전혜숙 · 주철현 · 최인호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가 폐업할 경우 해당 영업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고, 환경부에 폐 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국세청에만 휴업·폐업신고를 하고 환경부에는 휴업·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잔여 유해화학 물질을 방치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한편,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자 휴업·폐업정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자의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나, 현행법에 국세 청에 신고된 휴업·폐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국세청의 휴업·폐업정보의 활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국세청 휴업·폐업정보를 주기적으로 조회함으로써 휴업·폐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

4항 신설).

법률 제 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① ~ ③	및 휴업·폐업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
	폐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
	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u>하는 바에 따라 휴업·폐업에</u>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u>한다.</u>